#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401 호 2023. 5. 11.(목)

ı		<u> </u>	М			
	$\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87호[하천점용 허기(협의) 고시]····	1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88호[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]····	2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89회[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‥	4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90호[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]·····	7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91회[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]····	8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.	고시	제2023-92호[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]·····	9
I		 공	J			
ı			_			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	공고	제2023-675호[행정대집행 계고서]·····	10
	$\bigcirc$	울산광역시	북구	공고	제2023-679호[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]····	11

안 내	하 ○ 긴 ○ 북	여 주시기 I 급한 내용은 구 전자공보	바랍니다. : 사전에 협 - 확인방법	! 발행되오니 의하여 주시 (gu.ulsan.kr)	기 바랍니다	}.		제출
회								

회		
람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87호

# 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8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(119재난대응과)						
주소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5						
점용 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20번지	하천의 명칭	동천				
점용 내용	수난안전시설물 설치(경고판, 구명부환)	점 <del>용</del> 면적	<b>0.28</b> m²				
점용 기간	2023. 5. 10. ~ 2027. 12. 31.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88호

##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의회 의결일자 : 2023. 5. 4.

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

(단위: 천원)

	구 분	예산액	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	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	총 계	512,513,900	100.00%	478,572,927	100.00%	33,940,973	7.09%
일반회계		510,193,557	99.55%	476,429,455	99.55%	33,764,102	7.09%
특별회계		2,320,343	0.45%	2,143,472	0.45%	176,871	8.25%
기타특별회계		2,320,343	0.45%	2,143,472	0.45%	176,871	8.25%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	72,076	0.01%	54,400	0.01%	17,676	32.49%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59,767	0.05%	223,072	0.05%	36,695	16.45%
	주차장특별회계	1,988,500	0.39%	1,866,000	0.39%	122,500	6.56%

공

### □ 일반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	장·관	예 산 액		기 정 액		비교조가	
	3·t	에 선 꼭	구성비	기 경 즉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	총 계	510,193,557	100.00%	476,429,455	100.00	33,764,102	7.09%
100	지방세수입	89,158,408	17.48%	91,322,408	19.17%	△2,164,000	△2.37%
1	10 지방세	89,158,408	17.48%	91,322,408	19.17%	△2,164,000	△2.37%
200	세외수입	27,264,852	5.34%	25,501,477	5.35%	1,763,375	6.91%
2	10 경상적세외수입	20,890,648	4.09%	20,709,673	4.35%	180,975	0.87%
22	20 임시적세외수입	5,580,422	1.09%	4,002,022	0.84%	1,578,400	39.44%
23	30 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	793,782	0.16%	789,782	0.17%	4,000	0.51%
300	지방교부세	19,350,000	3.79%	18,175,000	3.81%	1,175,000	6.46%
3	10 지방교부세	19,350,000	3.79%	18,175,000	3.81%	1,175,000	6.46%
400	조정교부금등	62,250,760	12.20%	56,552,760	11.87%	5,698,000	10.08%
4	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	62,250,760	12.20%	56,552,760	11.87%	5,698,000	10.08%
500	보조금	282,135,929	55.30%	271,574,810	57.00%	10,561,119	3.89%
5	10 국고보조금등	184,456,250	36.15%	178,357,033	37.44%	6,099,217	3.42%
52	20 시・도비보조금등	97,679,679	19.15%	93,217,777	19.57%	4,461,902	4.79%
700	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0,033,608	5.89%	13,303,000	2.79%	16,730,608	125.77%
7	10 보전수입등	28,636,941	5.61%	12,000,000	2.52%	16,636,941	138.64%
72	20 내부거래	1,396,667	0.27%	1,303,000	0.27%	93,667	7.19%

### □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예 산 액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	총 계	510,193,557	100.00%	476,429,455	100.00%	33,764,102	7.09%
010	일반공공행정	22,276,389	4.37%	21,094,996	4.43%	1,181,393	5.60%
020	공공질서및안전	2,104,201	0.41%	2,020,826	0.42%	83,375	4.13%
050	교육	1,954,761	0.38%	1,909,143	0.40%	45,618	2.39%
060	문화및관광	25,438,099	4.99%	21,808,228	4.58%	3,629,871	16.64%
070	환경	13,724,189	2.69%	13,726,489	2.88%	△2,300	△0.02 %
080	사회복지	259,472,311	50.86%	253,093,344	53.12%	6,378,967	2.52%
090	보건	20,591,697	4.04%	15,699,370	3.30%	4,892,327	31.16%
100	농림해양수산	28,743,475	5.63%	23,918,173	5.02%	4,825,302	20.17%
110	산업・중소기업및에너지	2,722,519	0.53%	2,101,788	0.44%	620,731	29.53%
120	교통및물류	13,705,819	2.69%	8,360,747	1.75%	5,345,072	63.93%
140	국토및지역개발	45,567,398	8.93%	41,722,583	8.76%	3,844,815	9.22%
160	예비비	6,665,690	1.31%	4,084,090	0.86%	2,581,600	63.21%
900	기타	67,227,009	13.18%	66,889,678	14.04%	337,331	0.50%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89호

#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-2번지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주차장 / 근린생활시설

나. 명칭: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사업
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-2번지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토지조서

토지소재	지 번	지 목	단 위	면 적	편입면적	비 고
울산광역시 북 구 매곡동	928-2	주	m²	1,263.40	1,263.40	
계					1,263.40	

#### 나. 건물조서

	주차전용	- 건축물	
개 요	주시설	부대시설	합 계
,,	주차장	근린생활시설	
면적	1,115.89	477.51	1,593.40

다. 시설물조서

건 물 별					
천 물 층 별	주차장	근린생활시설	합계	刵	고
지상 1층	1,115.89	8.32	1,124.21		
지상 2층		469.19	469.19		
계	1,115.89	477.51	1,593.40	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: 윤경호

나. 주소: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, 101동 502호(신정동 월드 메르디앙)

- 5. 사업기간: 인가일 ~ 2024. 12. 31.
- 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

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 없음
- 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 052-241-79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(1)

번	번 지번 호 (매곡동)	지목	대장 면적	편 입 면 적		소 유 자		
호				부지	계	성 명	주 소	
1	928-2	주	1,263.4	1,263.4	1,263.4	윤경호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, 101동 502호	
계		1,263.4	1,263.4	1,263.4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90호

##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고시내역

협의 번호	<b>ग</b> ठ	· 기가자	71 () 71 )	면적	-1 -1	점용목적	
	성 명	주 소	점용장소	$(m^2)$	기간		
제2023 -2호	동남해안 해상풍력㈜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4로 21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북동 해상	1,293.19	′23. 08. 01. ~ ′23. 10. 31.	해상 시추조사 (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)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91호

# 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9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전충배				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42(상안동, 쌍용아진그린타운 101동 1304호)						
점용 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44번지	하천의 명칭	상안천				
점용 내용	토지의 점용	점 <b>용</b> 면적	64.0 m²				
점용 기간	2023. 5. 11. ~ 2027. 12. 31.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92호

##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□ 고시내역

협의	可可	허가자	71 () 71 )	면적	-1 -1	점용목적	
협의 번호	성 명	주 소	점용장소	(m²)	기간		
제2023 -3호	㈜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	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5-1 동측 2.0km~13.0km 전면해상	13,680.01	'23. 05. 11. ~ '23. 11. 10.	울산 해울이 해상풍력(1,2,3)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	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울산광역시 공보 제2023 - 675호

## 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: 미상 주소: 미상

2023년 4월 4일,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제5476호로 울산광역시 소유 토지에서의 불법경작에 대해 2023년 5월 4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공유재산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23년 6월 16일까지**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	
연암동 산41-4번지 연암동 산41-6번지 연암동 산41-9번지	경작	해당지번 내 불법경작 일체	불법경작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	

2023년 5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679호

#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5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161호)사업

나. 명 칭 :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
- 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
- 3. 사업개요 : 주차장 조성 64면 (A=1,866 m²)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 1004-1)

- 5. 사업기간 : 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
- 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 편입토지조서와 같음
- 7. 열람기간 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- 8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
- 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 광역시 북구 도시과(☎052-241-79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편입토지조서

울산광역시 북구

NO	위치	지번	지목	대장면적 (m²)	편입면적 (m²)	소유자	비고
1	송정동	1156	차	1866	1866	울산광역시 북구	
합계				1,866	1,866		